「평창군 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위

가.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1. 11. 22(화) 평창군수

나. 회부일자 : 2011. 12. 19(월)

다. 상정일자 : 2011. 12. 20(화) 제182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특위 상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재무과장)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감면대상을 제외하고, 저소득 서민지원과 지역발전 등에 필요한 감면대상을 규정하고자 평창군 군세 감면조례를 전문개정 하고자 함.

3.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장동기)

○ 본 조례안은 기존 「평창군 군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11.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감면대상을 새로이 규정하는 전부개정 조례안임.

○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된 지식산업센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등은 삭제하고

- 시각장애인(4급) 소유 자동차, 문화재, 지역특산품 생산단지,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등은 기존 조례에 연속해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면제 또는 감면을 받도록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새로이 제정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 지역경제 및 서민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세제지원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해 지속 노력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평창군 군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